ĐIỀU ƯỚC QUỐC TẾ

Thông báo số 19/2022/TB-LPQT ngày 18 tháng 5 năm 2022 về việc điều ước quốc tế có hiệu lực: "Công hàm trao đổi sửa đổi Quy tắc cụ thể mặt hàng quy định tại Phụ lục 3-A của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giữa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và Chính phủ nước Đại Hàn Dân Quốc"

(Tiếp theo Công báo số 411 + 412)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4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403 호의 물품은 우유성분 중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성분 총중량이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4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5.10	-버터	완전생산기준
		0405.2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완전생산기준
		04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6		치즈와 커드(curd)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완전생산기준
		0406.2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완전생산기준
		0406.3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406.30 호의 물품은 우유성분 중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성분 총중량이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35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0406.4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완전생산기준
		0406.90	-그 밖의 치즈	완전생산기준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부화용 수정란	
		0407.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완전생산기준
		04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신선란	
		0407.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완전생산기준
		04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의 노른자위	
		0408.11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408.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0408.91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408.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9		천연꿀	
		0409.00	-천연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4.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1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05			제 5 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01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0501.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2		돼지털 · 멧돼지털 · 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2.10	-돼지털 · 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4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 · 방광 · 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 건조한 것 ·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4.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 · 방광 · 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 건조한 것 ·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5.05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청정 · 소독 ·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5.1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완전생산기준
		05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6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506.1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5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7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7.10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8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8.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10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0.00	-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 1 류나 제 3 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0511.10	-소의 정액	완전생산기준
			-기타	
		0511.91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 3 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완전생산기준
		051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제 6 류-제 14 류)				
06			제 6 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 ·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06.01		인경(鱗莖) · 괴경(塊莖) · 괴근(塊根) · 구경(球莖) · 관근(冠根) ·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 · 치커리 뿌리(제 1212 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0601.10	- 인경(鱗莖) · 괴경(塊莖) · 괴근(塊根) · 구경(球莖) · 관근(冠根) ·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완전생산기준
		0601.20	- 인경(鱗莖) · 괴경(塊莖) · 괴근(塊根) · 구경(球莖) · 관근(冠根) · 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 · 치커리 뿌리	완전생산기준
	06.02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 · 꺾꽂이용 가지 · 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	
		0602.1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602.20	-수목과 관목(식용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3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4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선한 것	
		0603.11	--장미	완전생산기준
		0603.12	--카네이션	완전생산기준
		0603.13	--난	완전생산기준
		0603.14	--국화	완전생산기준
		0603.15	--백합[릴리움(Lilium)종]	완전생산기준
		06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4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이끼·지의(地衣)(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4.20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6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			제 7 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1.10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07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2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2.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03		양파 · 쪽파 · 마늘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10	-양파와 쪽파	완전생산기준
		0703.20	-마늘	완전생산기준
		0703.9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07.04		양배추 · 꽃양배추 · 구경(球莖)양배추 · 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1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완전생산기준
		0704.20	-방울다다기 양배추	완전생산기준
		07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상추	
		0705.11	--결구(結球) 상추	완전생산기준
		0705.19	--기타	완전생산기준
			-치커리(chicory)	
		0705.21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완전생산기준
		0705.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6		당근 · 순무 ·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 선모(仙茅) · 셀러리액(celeriac) ·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10	-당근과 순무	완전생산기준
		07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7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8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08.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08.20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완전생산기준
		0708.9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완전생산기준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2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완전생산기준
		0709.30	-가지(에그플랜트)	완전생산기준
		0709.40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버섯과 송로(松露)	
		0709.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09.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9.6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완전생산기준
		0709.70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기타	
		0709.91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완전생산기준
		0709.92	--올리브	완전생산기준
		0709.93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완전생산기준
		0709.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10	-감자	완전생산기준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0710.21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10.22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완전생산기준
		0710.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30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0710.40	-스위트콘	완전생산기준
		0710.80	-그 밖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0710.90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11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 · 염수 · 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20	-올리브	완전생산기준
		0711.40	-오이류	완전생산기준
			-버섯과 송로(松露)	
		0711.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11.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1.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20	-양파	완전생산기준
			-버섯,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송로(松露)	
		0712.3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12.32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완전생산기준
		0712.33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완전생산기준
		071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2.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713.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13.2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완전생산기준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0713.31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 · 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완전생산기준
		0713.32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 · 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완전생산기준
		0713.33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13.34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완전생산기준
		0713.35	--등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완전생산기준
		071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3.40	-렌즈콩	완전생산기준
		0713.5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완전생산기준
		0713.6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완전생산기준
		071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4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완전생산기준
		0714.20	-고구마	완전생산기준
		0714.30	-얌[디오스코레아(Dioscorea)종]	완전생산기준
		0714.40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종]	완전생산기준
		0714.50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종]	완전생산기준
		071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			제 8 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코코넛	
		0801.11	--말린 것	완전생산기준
		0801.12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브라질너트	
		0801.2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01.2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캐슈너트(cashew nut)	
		0801.3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32	--껍데기를 벗긴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아몬드	
		0802.1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12	--껍데기를 벗긴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헤즐너트(hazelnut)나 필버트(filbert)[코리루스(Corylus)종]	
		0802.2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2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호두	
		0802.3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3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0802.4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4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피스타치오(pistachio)	
		0802.5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5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	
		0802.6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6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70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완전생산기준
		0802.80	-빈랑자(areca nut)	완전생산기준
		08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10	-플랜틴(plantain)	완전생산기준
		08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4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아보카도(avocado) ·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한정한다)	
		0804.10	-대추야자	완전생산기준
		0804.20	-무화과	완전생산기준
		0804.30	-파인애플	완전생산기준
		0804.40	-아보카도(avocado)	완전생산기준
		0804.50	- 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	완전생산기준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10	-오렌지	완전생산기준
			-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g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805.21	--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5.22	--클레멘타인(clementine)	완전생산기준
		0805.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5.4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5.5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완전생산기준
		08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6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10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6.20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0807.11	--수박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7.20	-포포(papaw)[파파야(papaya)]	완전생산기준
	08.08		사과 · 배 · 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1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08.30	-배	완전생산기준
		0808.40	-마르멜로(quince)	완전생산기준
	08.09		살구 · 체리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 자두 · 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10	-살구	완전생산기준
			-체리	
		0809.21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완전생산기준
		0809.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9.30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9.40	-자두와 슬로(sloe)	완전생산기준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10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0.20	-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loganberry)	완전생산기준
		0810.30	-흑색 · 백색 ·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완전생산기준
		0810.40	-크랜베리(cranberry) · 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완전생산기준
		0810.60	-두리안(durian)	완전생산기준
		0810.70	-감	완전생산기준
		0810.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10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1.2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 · 백색 · 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2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 · 염수 · 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2.10	-체리	완전생산기준
		081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3		건조한 과실(제 0801 호부터 제 0806 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10	-살구	완전생산기준
		0813.20	-프룬(prune)	완전생산기준
		0813.3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13.40	-그 밖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3.5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 · 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4.00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 · 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			제 9 류 커피 · 차 · 마테(maté) · 향신료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1.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22	--카페인을 제거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90	-기타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9.02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902.1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2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4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완전생산기준
	09.03		마테(maté)	
		0903.00	-마테(maté)	완전생산기준
	09.04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후추	
		0904.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4.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4.21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4.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5		바닐라	
		0905.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5.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6.11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906.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906.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9.07		정향(丁香)(과실·꽃·꽃대로 한정한다)	
		0907.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7.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8		육두구(肉荳蔻)·메이스(mace)·소두구(小荳蔻)	
			-육두구(肉荳蔻)	
		0908.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메이스(mace)	
		0908.2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소두구(小荳蔻)	
		0908.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3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9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회향(茴香)·코리앤더(coriander)·커민(cumin)·캐러웨이(caraway)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코리앤더(coriander)의 씨	
		0909.2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커민(cumin)의 씨	
		0909.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3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캐러웨이(caraway)·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6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6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10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생강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910.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10.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10.20	-사프란(saffron)	완전생산기준
		0910.30	-심황[강황(薑黃)]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향신료	
		0910.91	--혼합물(제 9 류의 주 제 1 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910.99	--기타	가. 타임, 월계수잎 : 완전생산기준 나. 기타 :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0			제 10 류 곡물	
	10.01		밀과 메슬린(meslin)	
			-듀럼종 밀(Durum wheat)	
		1001.1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1001.9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2		호밀	
		1002.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3		보리	
		1003.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4		귀리	
		1004.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5		옥수수	
		1005.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6		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006.10	-벼	완전생산기준
		1006.20	-현미	완전생산기준
		1006.30	-정미(연마 ·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006.40	-쇄미(broken rice)	완전생산기준
	10.07		수수	
		1007.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		메밀 · 밀리트(millet) · 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1008.10	-메밀	완전생산기준
			-밀리트(millet)	
		1008.2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8.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30	-카나리시드(canary seed)	완전생산기준
		1008.40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종]	완전생산기준
		1008.5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완전생산기준
		1008.60	-라이밀(triticale)	완전생산기준
		1008.90	-그 밖의 곡물	완전생산기준
11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1.01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1.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2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2.20	-옥수수가루	완전생산기준
		1102.90	-기타	가. 쌀가루, 호밀가루: 완전생산기준 나.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03 호 및 제 1006 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003 호 및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1006 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11.03		곡물의 부순 알곡 · 거친 가루 · 펠릿(pellet)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11	--밀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3.13	--옥수수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3.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03 호 및 제 1006 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003 호 및 제 1006 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103.20	-펠릿(pellet)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03 호 및 제 1006 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003 호 및 제 1006 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진주 모양인 것 ·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 거칠게 빻은 것(제 1006 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잘게 부순 것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104.12	--귀리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4.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03 호 및 제 1006 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003 호 및 제 1006 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 진주 모양인 것 · 얇은 조각으로 만든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것 · 거칠게 빻은 것)	
		1104.22	--귀리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23	--옥수수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2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30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11.05		감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1105.10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5.20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완전생산기준
	11.06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 0713 호의 것), 사고(sago) · 뿌리나 괴경(塊莖)(제 0714 호의 것), 제 8 류 물품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1106.1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6.20	-사고(sago) · 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 0714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6.30	-제 8 류 물품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7.10	-볶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7.20	-볶은 것	완전생산기준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전분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108.11	--밀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8.12	--옥수수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8.13	--감자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8.14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8.19	--그 밖의 전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8.20	-이눌린(inuli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9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1109.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			제 12 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30	-종자	완전생산기준
			-기타	
		1202.4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202.42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3		코프라(copra)	
		1203.00	-코프라(copra)	완전생산기준
	12.04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4.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5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5.1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완전생산기준
		12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6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10	-팜너트(palm nut)와 핵(核)	완전생산기준
			-목화씨	
		1207.21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7.30	-피마자	완전생산기준
		1207.40	-참깨	완전생산기준
		1207.50	-겨자씨	완전생산기준
		1207.6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70	-멜론 종자	완전생산기준
			-기타	
		1207.91	--양귀비씨	완전생산기준
		1207.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8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08.10	-대두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2.09		파종용 종자 · 과실 · 포자(胞子)	
		1209.10	-사탕무 종자	완전생산기준
			-사료용 식물의 종자	
		1209.21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2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3	--페스큐(fescue)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4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5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 · 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완전생산기준
		1209.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9.3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완전생산기준
			-기타	
		1209.91	--채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0		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	
		1210.10	-홉(hop)[잘게 부순 것 · 가루 모양 ·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1210.20	-홉(hop)[잘게 부순 것 · 가루 모양 ·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완전생산기준
	12.11		주로 향료용 · 의료용 · 살충용 · 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11.20	-인삼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211.30	-코카잎	완전생산기준
		1211.40	-양귀비줄기	완전생산기준
		1211.50	-마황(麻黃)	완전생산기준
		12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1212.21	--식용	완전생산기준
		121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1212.91	--사탕무	완전생산기준
		1212.92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완전생산기준
		1212.93	--사탕수수	완전생산기준
		1212.94	--치커리(chicory) 뿌리	완전생산기준
		1212.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3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3.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14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214.1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완전생산기준
		121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3			제 13 류 락(lac), 검 · 수지 ·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1		락(lac), 천연 검 · 수지 · 검 수지 · 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	
		1301.20	-아라비아 검	완전생산기준
		13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 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2.11	--아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2	--감초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3	--홉(hop)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4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1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3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1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302.20	-펙틴질 ·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31	--한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2	--로커스트콩(locust bean) ·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4.01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	
		1401.10	-대나무	완전생산기준
		1401.20	-등나무	완전생산기준
		14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4.0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4.20	-면(綿) 린터(lint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 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제 15 류)				
15			제 15 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15.01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과 가금(家禽)의 지방(제 0209 호나 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1.10	-라드(l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1.20	-그 밖의 돼지의 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2		소·면양·산양의 지방(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10	-탤로우(tallo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3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탤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 · 혼합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1503.00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탤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 · 혼합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4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4.10	-어류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4.2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4.30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5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1505.00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6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06.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10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10	-버진(virg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1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1.10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1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1512.21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3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1513.11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	
		1513.21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4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1514.11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1514.91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5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1515.11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21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5.3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15.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6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10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6.20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7		마가린, 동물성 ·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 1516 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1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18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 · 탈수 · 황화 · 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518.00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 · 탈수 · 황화 · 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5.2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152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21		식물성 납(蠟)[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 제외한다] · 밀랍(蜜蠟)과 그 밖의 곤충납(昆蟲蠟) · 경납(鯨蠟)(정제했는지 또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1521.10	-식물성 납(蠟)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2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22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 · 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1522.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 · 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4 부 조제 식료품, 음료 · 주류 · 식초, 담배 · 제조한 담배 대용물(제 16 류-제 24 류))				
16			제 16 류 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 · 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1601.00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 · 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 · 설육(屑肉)이나 피	
		1602.10	-균질화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20	-동물 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 류, 제 2 류 및 제 5 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 류, 제 2 류 및 제 5 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 01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31	--칠면조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 류, 제 2 류 및 제 5 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 류, 제 2 류 및 제 5 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1602.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돼지로 만든 것	
		1602.41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42	--어깨살과 그 절단육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 류, 제 2 류 및 제 5 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 류, 제 2 류 및 제 5 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1602.4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50	-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9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3		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1603.00	-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11	--연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2	--청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604.13	-- 정어리 · 사르디넬라(Sardinella) · 브리스링(brisling) · 스프랫(spra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4	-- 다랑어 · 가다랑어 · 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5	--고등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6	--멸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7	--뱀장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8	--상어 지느러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2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1604.31	--캐비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604.32	--캐비아 대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 · 연체동물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10	-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새우류	
		1605.21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30	-바닷가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40	-그 밖의 갑각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연체동물	
		1605.51	--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2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605.53	--혼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4	--갑오징어와 오징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5	--문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6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7	--전복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8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61	--해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62	--성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605.63	--해파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			제 17 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701.12	--사탕무당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 류의 것은 제외한다)
		1701.13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 류의 것은 제외한다)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 류의 것은 제외한다)
			-기타	
		1701.91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 류의 것은 제외한다)
		1701.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 류의 것은 제외한다)
	17.0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유당(乳糖)과 유당(乳糖)시럽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702.11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20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3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4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 100 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5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60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90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糖類)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3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3.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409 호 및 제 17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409 호 및 제 17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704.1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801.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1802.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1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3.2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4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804.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5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1805.00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10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20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 · 슬래브 모양 · 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 · 페이스트(paste) · 가루 · 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블록 모양 · 슬래브 모양 · 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806.31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32	--속을 채우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			제 19 류 곡물 · 고운 가루 · 전분 ·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 · 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1.10	-영유아 · 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1.20	-제 1905 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 · 마카로니 · 누들 · 라자니아(lasagne) · 뇨키(gnocchi) · 라비올리(ravioli) · 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902.11	--새의 알을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2.2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2.30	-그 밖의 파스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2.40	-쿠스쿠스(couscou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3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 · 낟알 모양 · 진주 모양 · 무거리 모양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903.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 · 낟알 모양 · 진주 모양 · 무거리 모양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904.10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4.20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4.30	-불거 밀(bulgur whe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0 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19.05		빵 · 파이 · 케이크 ·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 실링웨이퍼(sealing wafer) · 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905.10	-귀리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5.2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스위트 비스킷, 와플, 웨이퍼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905.31	--스위트 비스킷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5.32	--와플과 웨이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5.40	-러스크(rusk) · 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			제 20 류 채소 · 과실 · 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 과실 ·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	-오이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1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3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1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10	-감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4.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10	-균질화한 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20	-감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4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2005.51	--껍데기를 벗긴 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6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70	-올리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8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5.91	--죽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6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 과실 · 견과류 · 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6.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 과실 · 견과류 · 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7		잼 · 과실젤리 · 마멀레이드(marmalade) ·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7.10	-균질화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007.91	--감귤류의 과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견과류 · 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11	--땅콩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 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8 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8.20	-파인애플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8 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8 류의 재료는 체약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2008.30	-감귤류 과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40	-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50	-살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60	-체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70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80	-초본류 딸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 2008.19 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91	--팜 하트(palm hear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93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2008.97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오렌지주스	
		2009.11	--냉동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12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주스	
		2009.2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009.3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파인애플주스	
		2009.4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8 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9.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8 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9.50	-토마토주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2009.61	--브릭스(Brix)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사과주스	
		2009.7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2009.81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음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음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음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8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90	-혼합 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			제 21 류 각종 조제 식료품	
	21.01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1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1.12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1.20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101.30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10	-활성 효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2.20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2.3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10	-간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3.20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3.30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1.04		수프 · 브로드(broth)와 수프 · 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104.10	-수프 · 브로드(broth)와 수프 · 브로드(broth)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4.2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211.20 호, 제 1212.21 호, 제 1212.29 호, 제 1302.14 호 및 제 1302.19 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21.05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2105.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211.20 호, 제 1212.21 호, 제 1212.29 호, 제 1302.14 호 및 제 1302.19 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2			제 22 류 음료 · 주류 · 식초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10	-광천수와 탄산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 2009 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202.91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211.20 호, 제 1302.14 호 및 제 1302.19 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2202.99	--기타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211.20 호, 제 1302.14 호 및 제 1302.19 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한정한다)
	22.03		맥주	
		2203.00	-맥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 20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1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2204.21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4.22	--2 리터 초과 10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4.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4.30	-그 밖의 포도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205.1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6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 · 배술 · 미드(mead) · 사케(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2206.00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 · 배술 · 미드(mead) · 사케(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7.2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 · 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8.20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208.30	-위스키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4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50	-진(gin)과 제네바(geneva)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60	-보드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70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9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2209.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			제 23 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		육 · 설육(屑肉)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2301.1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펠릿(pellet)과 수지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301.20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펠릿(pelle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		밀기울 · 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 · 채두류(菜豆類)의 선별 · 제분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10	-옥수수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2.30	-밀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2.40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2.5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1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3.2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303.3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4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5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5.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304 호나 제 2305 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10	-목화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20	-아마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3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306.41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5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8 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8 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2306.6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7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2307.00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8		사료용 식물성 물질 · 식물성 웨이스트(waste) · 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308.00	-사료용 식물성 물질 · 식물성 웨이스트(waste) · 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8 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8 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1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4			제 24 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401.10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2401.20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2401.30	-담배 부산물	완전생산기준
	24.02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 · 궐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402.10	-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2403 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6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4.03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 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2403.11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2403.91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제 25 류-제 27 류)				
25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 석회 · 시멘트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2501.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완전생산기준
	25.02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502.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03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503.00	-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4		천연 흑연	
		2504.10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5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6 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5.10	-규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6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6.10	-석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06.20	-규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7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7.00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		그 밖의 점토(제 6806 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硅線石) [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2508.10	-벤토나이트(bentoni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30	-내화(耐火)점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40	-그 밖의 점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50	- 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硅線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60	-멀라이트(mulli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70	-샤모트(chamotte),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09		초크	
		2509.00	-초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0		천연 인산칼슘 ·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0.20	-잘게 부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1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16 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1.1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1.2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2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 · 트리폴리트(tripolite) ·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12.00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 · 트리폴리트(tripolite) ·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13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3.10	-부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3.20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4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4.00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5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리석과 트래버틴(travertine)	
		2515.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5.12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15.20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6		화강암 · 반암(斑巖) · 현무암 · 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 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화강암	
		2516.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6.12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6.20	-사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6.90	-그 밖의 석비(石碑)용 · 건축용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7		자갈 · 왕자갈 · 쇄석(碎石)[콘크리트용 · 도로 포장용 · 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 macadam),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 · 파편 · 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17.10	- 자갈 · 왕자갈 · 쇄석(碎石)[콘크리트용 · 도로 포장용 · 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7.20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7.3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 · 파편 · 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41	--대리석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8		백운석(白雲石)[하소(煆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2518.10	-하소(煆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8.20	-하소(煆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18.3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9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기타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9.1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0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煆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0.10	-석고와 무수(無水)석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0.20	-플라스터(pl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1		석회석 융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2521.00	-석회석 융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22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수경성(水硬性) 석회(제 2825 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2.10	-생석회(生石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2.20	-소석회(消石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2.30	-수경성(水硬性) 석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3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 슬래그(slag) 시멘트 · 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3.10	-시멘트 클링커(clink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2523.21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3.3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23.90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4		석면	
		2524.10	-청(靑)석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waste)	
		2525.1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5.20	-운모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5.30	-운모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6		천연 동석(凍石)[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활석	
		2526.10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6.20	-부수거나 가루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28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28.00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10	-장석(長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형석(螢石)	
		2529.21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9.22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9.30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3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2530.10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30.2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			제 26 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26.01		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철광과 그 정광[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은 제외한다]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1.12	--응결시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1.2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2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2602.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3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4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604.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5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2605.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6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2606.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7		납광과 그 정광(精鑛)	
		2607.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8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9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2609.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261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1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2611.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6.12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2612.1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2.2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2613.10	-배소(焙燒)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4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2614.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5		니오븀광 · 탄탈륨광 · 바나듐광 · 지르코늄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2615.1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2616.10	-은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6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7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2617.1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8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2618.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9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2619.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2620.11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주로 납을 함유하는 것	
		2620.21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3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4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6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620.91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1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621.1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6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			제 27 류 광물성 연료 · 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27.01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 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석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2701.11	--무연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1.12	--유연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1.19	--그 밖의 석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1.20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 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2		갈탄(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흑옥은 제외한다)	
		2702.1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2.20	-응결시킨 갈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3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703.00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4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 · 갈탄 ·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2704.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 · 갈탄 ·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5		석탄가스 · 수성(水性)가스 · 발생로(發生爐) 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2705.00	- 석탄가스 · 수성(水性)가스 · 발생로(發生爐) 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6		석탄 · 갈탄 ·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2706.00	-석탄 · 갈탄 ·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07.10	-벤조올(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20	-톨루올(톨루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707.30	-크실롤(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40	-나프탈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5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아이 · 에스 · 오(ISO) 3405 방법{에이 · 에스 · 티 · 엠 디(ASTM D)86 의 방법과 동등}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707.91	--크레오소트(creosote)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8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2708.10	-피치(pitc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8.20	-피치코크스(pitch coke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9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액화한 것	
		2711.11	--천연가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12	--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13	--부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14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부타디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가스 상태인 것	
		2711.21	--천연가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2		석유젤리・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슬랙왁스(slack wax)・오조케라이트(ozokerite)・갈탄왁스・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712.10	-석유젤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2.2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3		석유코크스 · 석유역청(瀝靑)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석유코크스	
		2713.11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3.12	--하소(煆燒)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3.20	-석유역청(瀝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3.9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4		천연의 역청(瀝靑) · 아스팔트,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10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5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2715.00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6		전기에너지	
		2716.00	-전기에너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6 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 28 류-제 38 류)				
28			제 28 류 무기화학품, 귀금속 · 희토류(稀土類)금속 · 방사성원소 ·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8.01		플루오르 · 염소 · 브롬 · 요드	
		2801.10	-염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1.20	-요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01.30	-플루오르와 브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2		승화황(昇華黃)ㆍ침강황(沈降黃)ㆍ콜로이드황	
		2802.00	- 승화황(昇華黃)ㆍ침강황(沈降黃)ㆍ콜로이드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3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3.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		수소ㆍ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10	-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희가스(rare gas)	
		2804.21	--아르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30	-질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40	-산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04.50	-붕소와 텔루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규소	
		2804.61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70	-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80	-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90	-셀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5		알칼리금속 · 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알칼리나 알칼리토류 금속	
		2805.11	--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5.12	--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5.30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5.40	-수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6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2806.10	-염화수소(염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6.20	-클로로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7		황산과 발연황산	
		2807.00	-황산과 발연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8		질산과 황질산	
		2808.00	-질산과 황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09.10	-오산화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0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2810.00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그 밖의 무기산	
		2811.11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1.12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1	--이산화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1.22	--이산화규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2812.11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12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13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14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15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16	--설퍼 디클로라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17	--티오닐 클로라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3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13.10	-이황화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4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4.10	-무수(無水)암모니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4.20	-암모니아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 · 과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2815.11	--고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5.12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5.2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5.30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6		수산화마그네슘 · 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128

(Xem tiếp Công báo số 415 + 416)

VĂN PHÒNG CHÍNH PHỦ XUẤT BẢN

Địa chỉ:	Số 1, Hoàng Hoa Thám, Ba Đình, Hà Nội
Điện thoại liên hệ:	
- Nội dung:	080.44417; Fax: 080.44517
- Phát hành:	080.48543
Email:	congbao@chinhphu.vn
Website:	http://congbao.chinhphu.vn
In tại:	Xí nghiệp Bản đồ 1- Bộ Quốc phòng